

김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3160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3. 1. 19.
제출자 장윤순 의원

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1월 19일 장윤순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

3. 주요내용

- 가. 제정목적, 정의 및 적용범위(안 제1조~제3조)
- 나. 시장의 책무 및 계획 수립(안 제4조~제5조)
- 다. 투광기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6조~제7조)
- 라. 예산 확보(안 제8조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야간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투광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,
- 제4조 및 제5조의 “관련기관과 협의하여” 라는 문구는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인 제7조의 내용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, 해당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됨.

- 아울러, 제6조제1항의 “이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” 문구 또한 제7조의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 후 같은 조 제2항과 병합하여 조항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됨.